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철도학회(이하 ‘학회’)의 한국철도학회논문집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한국철도학회논문집(이하 “논문집”)의 논문투고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격)

본 학회의 회원 및 비회원 모두 투고할 수 있다. 단, 교신저자 또는 주저자(제1저자)가 비회원인 경우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논문심사료와 논문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3조(교신저자)

공저의 경우 교신저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교신저자는 논문의 투고, 수정 및 보완, 논문심사료 및 논문게재료의 납부 등 논문투고의 제반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논문작성)

위원회에서 별도로 규정한 논문원고작성규정(논문원고작성요강 및 세부지침)을 준수한다.

제5조(참고문헌작성)

참고문헌은 논문의 끝부분에 본문에서의 인용 순서로 기술되어야 하며, 모두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명을 4명 까지만 기입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문작성요강 및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6조(논문투고)

논문투고는 상시가능하며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투고 및 심사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7조(원고투고 및 문의처)

논문투고 및 인쇄와 관련한 사항은 학회사무국 논문집담당자(이메일 paper@railway.or.kr; 전화 02-794-5160)에게 문의할 수 있다.

제8조(논문심사료)

- ① 교신저자는 논문투고시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② 납부된 논문심사료는 논문의 반려, 철회, 채택불가 등으로 인하여 환불되지 않는다.

제9조(논문접수)

투고논문의 접수일은 교신저자가 논문원고를 논문투고규정에 따라 투고하고 논문심사료를 완납한 일자로 한다.

제10조(논문반려)

‘논문투고규정’ 또는 ‘논문작성지침 및 세부지침’을 현저히 위배하거나 영문초록의 영어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경우 투고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논문재투고)

일반 논문투고 절차에 따르며, 재투고에 따르는 논문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논문반환)

접수 또는 반려된 논문의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논문공개)

접수된 논문의 원고는 논문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접수일로부터 논문심사 완료시점까지 논문심사 담당 편집위원과 위촉된 논문심사위원에 한해 공개된다.

제14조(논문심사)

- ① 논문심사는 3명의 심사위원에 의해 온라인 논문심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때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될 수 있다.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은 심사위원 과 편집위원의 지적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하며 반드시 ‘논문작성요강 및 세부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② 논문심사 결과는 교신저자에게 통보되며, 통보일로부터 초심의 경우 3개월, 재심 이상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수정 및 보완된 논문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채택불가로 처리된다.

제15조(논문채택)

접수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의 채택은 본 논문집의 논문심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단, 게재를 위해 논문의 부분적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최종논문원고)

- ① 접수된 논문이 게재예정으로 채택되면 교신저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논문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최종논문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 ② 최종논문원고를 채택판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투고논문이 교신저자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7조(저작권양도서 및 저자점검표)

본 논문집에서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교신저자는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저작권양도서와 저자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채택판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저자점검표와 저작권 양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교신저자가 해당 논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8조(논문게재료)

교신저자는 채택으로 판정된 논문이 출판(인쇄)되기 이전까지 학회가 정한 소정의 논문게재료를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본 학회 사무국에서 통보한 기한까지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신저자가 해당 논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9조(논문철회)

교신저자는 논문의 출판(인쇄) 이전에 국한하여 투고논문을 철회할 수 있다. 단, 논문의 조판 중에 철회할 경우에는 학회가 산정하는 조판비용 및 출판지연에 따른 일체의 손해비용을 교신저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20조(논문저자변경)

논문저자명의 추가, 삭제, 저자명 순서에 대한 변경은 해당 논문이 출판(인쇄)되기 이전까지 가능하다. 단, 교신저자는 추가 또는 삭제되는 저자를 포함하는 모든 저자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1조(논문게재순서)

- ① 채택으로 판정된 논문은 최종논문원고와 저작권양도서가 모두 제출된 일자의 순서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 순서가 조정될 수 있다.
- ② 저작권양도서의 제출 또는 논문게재료의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논문의 게재가 지연될 수 있다.

제22조(논문별쇄본)

- ① 별쇄본은 교신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단, 논문집 1권을 교신저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 ② 교신저자가 별쇄본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책임과 연구출판윤리)

- ① 투고 및 게재된 논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으며, 저자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 ② 타 논문집에 투고 중인 논문은 본 논문집에 중복 투고할 수 없으며, 본 논문집에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은 타 논문집에 중복 투고할 수 없다.
- ③ 모든 저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본 논문집은 국제표준출판윤리에 따른다(<http://publicationethics.org/static/1999/1999pdf13.pdf>).

제24조(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위원의 1/3 참석과 출석 편집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편집자문위원은 참석 및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5조

본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인 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8년 0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5년 01월 20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7년 10월 22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9년 02월 23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9년 10월 16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0년 02월 25일부터 전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0년 06월 11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8. (일부개정) 제 20조 ②항은 2011년 5월 2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경과규정) 제 2조 및 19조 ①항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9. (일부개정) 제 5조, 제 7조, 제 10조, 제 14조, 제 17조 및 제 23조 ③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